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연장함(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개정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